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25%를 적용 자산기준 상향〉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41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2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방카슈랑스 규제 현황	9
2.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	16
3. 25%를 적용 자산기준 상향	21

I. 제안경위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155호)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15.

2.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126호)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23.

다. 회 부 일 : 2026.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155호)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

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

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2.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126호)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조합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조합원 및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였으며, 현행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모집비중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2011년 당시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후 경제 규모와 규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다른 자산규모 기준 법령의 상향 조정과 달리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년 1개에서 2026년 33개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조합의 성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

장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1항·제3항).

Ⅲ. 검토의견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는 2027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되,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에 대하여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이하 '25%룰').

서삼석의원안과 김선교의원안은 모두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퇴직연금상품 판매 금지 및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제 제외의 적용 기한을 각각 2032년 3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김선교의원안은 25%룰이 적용되는 조합의 자산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년 뒤인 2032년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조합에만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81호 농업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020호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 용 포함)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 ----- ----- -----2032년 3 월 1일----- -----제29 조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 ----- ----- -----203 2년 3월 1일----- -----제29조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illegible]

현행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3. <u>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u> <u>100분의 70</u> 4. <u>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u> <u>100분의 55</u> 5. <u>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u> <u>100분의 40</u> 6. <u>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까지:</u> <u>100분의 25</u> ④ ~ ⑩ (생략)	6. ----- ----- ----- -----<u>20년</u>----- ----- ④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2032년 1월 1일 이후: <u>5조원</u> ④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방카슈랑스 규제 현황

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방카슈랑스¹⁾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방카슈랑스는 고객 측면에서 보험 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 측면에서는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험사 측면에서는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판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권이 위축되는 문제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도 함께 도입됨.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는 「보험업법」 제91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①판매상품 제한, ②판매비율 제한, ③ 판매인원 제한, ④판매방법 제한이 있음.

1)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금융겸업모델임.

2)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험업법」은 은행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장성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려면 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보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자산 2조원 초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상품 모집총액 중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등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집중될 경우 대해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은행 점포별 보험상품 모집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및 점포 밖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기존 보험설계사의 영업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에 대한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방카슈랑스 관련 주요규제]

규제 현황	주요 내용	근거(보험업법)
①판매상품 제한	■저축성, ³⁾ 제3보험 ⁴⁾ 등 일부 상품만 허용 ※ 종신·자동차 보험 등 판매 불가	법§91② 영§40②
②판매비율 제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1개 보험사 판매비율 <u>25%</u> 이내	법§91③ 영§40⑥
③판매인원 제한	■점포당 보험판매 인원 2명 이내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법§83,§91③ 영§40④,⑤
④판매방법 제한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 ■점포 외부에서 영업 불가	법§100①4. 영§40③

2026년 7월말 기준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⁵⁾은 은행 16개, 증권 6개, 저축은행 2개, 카드 7개를 합한 31개이며, 모든 농·축협 조합(1,106개)은 개별 법인으로서 각각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현황]

구분	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	합계	농·축협조합
개수	16	6	2	7	31	1,106

자료: 농협생명보험

한편,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1개사⁶⁾임.

[방카슈랑스 제휴 보험사 현황]

구분	상품 비중	제휴 보험사	실제 상품 판매사
생명보험 (22개사)	보장성(47.2) :저축성(52.8)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K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DB생명, IBK연금,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 ABL생명, AIA생명, 처브라이프, 푸본현대생명, 라이나생명, iM라이프, 농협생명	제휴 보험사 22개사

3)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4) 암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 판매 가능하며, 특별약관(입원비, 수술비지급 등)이 부가되지 않은 형태의 상품만 판매 가능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의미함.

*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22개 생보사는 모두 방카슈랑스에 참여 중이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7개 손보사(재보험사 제외) 중 11개 보험사가 방카슈랑스에 참여 중임.

구분	상품 비중	제휴 보험사	실제 상품 판매사
손해보험 (11개사)	보장성(97.7) :저축성(2.3)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신한EZ손보, 롯데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자료: 농협생명보험

다만, 현재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실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팔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 비중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축소 또는 중단⁷⁾하여 실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장기보장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4개사(농협손보,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뿐임.

[2023년 6월말 기준 보험사별 보험 가입 경로 비중]

구분	방카슈랑스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기타
생보사	19.4%	32.1%	25.4%	23.2%
손보사	1.9%	44.4%	27.8%	25.8%

자료: 보험연구원(KIRI), '2024년 보험산업 과제', 2024.1.19.

나.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도입 경과

2011년까지 농협의 보험사업은 조합원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사업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농축협 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자⁸⁾로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음.

7) 삼성·한화·흥국·메리츠는 기업성보험의 갱신계약만 취급, 하나·신한EZ는 계열은행에서만 판매, 롯데·MG·라이나손보는 내부적인 이유로 방카사업 중단

8)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1304호, 2012.2.10.]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공제사업

그런데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의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축협 조합도 「보험업법」 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9)되어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공제와 보험 비교]

구분	공제	보험
근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사업주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보험회사
겸영여부	생보·손보 겸영	생보·손보 겸영 금지
감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공제사업감독기준, 공제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자료: 농협생명보험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농업인이 농·축협 조합에서 기존의 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②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¹⁰⁾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제61조(공제 규정) ①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10) 조합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제1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금융(제2금융권)으로서 은행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수신과 여신을 주 업무로 하는데 반하여 조합은 제한된 구역에서 경제사업, 교육사업, 신용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경영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함.

이에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제10522호, 2011. 3. 31.)에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특례를 두게 된 것임.

['12 사업구조개편 전후 농협의 보험사업 체계]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12.3~)
농.축협 조합	공제사업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규제 5년 유예)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자 (생명·손해 겸영)	⇒ 농협생명보험
보험분사		⇒ 농협손해보험
농협은행	공제사업자(판매채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규제 즉시 적용)

자료: 농협생명보험

다만, 방카슈랑스 규제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는 25%룰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되 판매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2017년 3월부터 25%룰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주요특례]

방카슈랑스 규제 내용	농협보험 판매	민영보험사 보험 판매
① (모집인원 : 2인 제한)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비적용 ※5년 유예	적용
② (모집방법 : out-bound 금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	비적용 ※5년 유예	적용
③ (모집비중 : 25% rule) 자산 2조원이상 조합은 1개사 상품이 모집총액의 25% 초과 불가	적용	적용
④ (모집상품) 개인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중 제3보험(질병·상해·간병)만 모집 가능	비적용 ※기존 공제 수준 가능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현재 25%를 제외 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의 유예기간은 5
년씩 두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7년 3월 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2.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2027년 3월 1일로 종료되는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2032년 3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보험특례가 종료될 경우 지역조합의 수익 감소로 조합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농축협은 보험판매와 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4년 기준 6,414억원 수준임.

그런데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험인력 축소, 점포외 보험상품 판매 불가 등으로 인해 신계약실적이 감소(977억원, 35.1%)하고, 이에 따라 보험수수료가 감소(4,616억원, 72.0%)하며, 농축협 전체 당기순이익 또한 감소(3,401억원, 20.7%)할 것으로 예상됨.

[특례 종료시 농축협 보험 사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2024년	특례 종료시	증 감	
			금 액	비 율
신계약실적	2,782억원	1,805억원	△977억원	△35.1%
보험수수료	6,414억원	1,798억원	△4,616억원	△72.0%
당기순이익	16,464억원	13,063억원	△3,401억원	△20.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축협 보험 발전방향」, 2025.12.

그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적자 농축협이 38개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5억원 미만인 영세 농축협도 142개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보험특례 종료시 일선 조합의 경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당기순이익 규모별 농축협수 분포 변화]

(단위: 개소, %)

구 분	2024년		특례 종료시		증감	
	농축협수 (A)	구성비	농축협수 (B)	구성비	농축협수 (B-A)	비율
20억원 이상	262	23.6	201	18.1	△61	△23.3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97	26.7	236	21.2	△61	△20.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31	29.8	311	28.0	△20	△6.0
5억원 미만	221	19.9	363	32.7	142	64.3
적자	52	4.7	90	8.1	38	73.1
전체	1,111	100.0	1,111	100.0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축협 보험 발전방향」, 2025.12.

다음으로, 농업인과 조합원의 편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농협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영농지원, 복지, 교육·홍보 등 사업에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의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농업인·조합원의 편익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보험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합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되어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험특례 규정을 통해 일선 농·축협은 보험금 지급, 계약변경, 보험해지 등의 보험서비스를 농·축협 점포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음.¹¹⁾

그러나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접수 대행만이 가능하여 조합의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익이 감소되고, 보험서비스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특례 종료시 농·축협 업무범위 변경]

구분	현재	특례 종료시
계약변경	즉시 변경	접수 및 스캔(보험사에서 처리 후 통보)
증권발행	즉시 발급	접수(보험사에서 우편발송)
제지급금	즉시 지급	접수 및 스캔(보험사에서 처리 후 통보)

자료: 농협생명보험

특히, 수익성이 부족한 농촌이나 도서지역에는 보험회사 지점 및 고객센터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농축협 점포에서 이와 같은 보험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 및 고령층 고객의 보험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읍면지역 보험회사 점포 및 고객센터 현황]

구분	점포			고객센터(개소)		
	전체	읍면지역	점유비	전체	읍면지역	점유비
전체보험사	5,580	219	3.9	407	6	1.5
생보사(21개사)	2,872	113	3.9	259	4	1.5
손보사(10개사)	2,708	106	3.9	148	2	1.4
농축협	4,752	2,402	50.5	고객센터 역할 병행		

주: '20년 5월말 기준(농축협은 '19년말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축협 보험 발전방향」, 2025.12.

- 11)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부칙 제3조제5항에서는 농·축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1일까지 예외적으로 조합에서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협법에 따른 보험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른 보험특례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일선 조합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행 부칙은 농협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하여금 2027년 3월 1일까지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¹²⁾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연계하여 퇴직연금상품 판매 제한규정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협 사업구조개편 전 농협 공제사업 부문은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없었음.

그런데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분리되어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됨에 따라, 일반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공제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기 위하여 농협 보험특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일반 보험회사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 부칙 제정 당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 것임.

12) 부칙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현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종합적으로 볼 때, 농협에 대한 보험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합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등 농업인·조합원의 편익이 감소하여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조합의 보험사업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농협에 대한 보험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3. 25%를 적용 자산기준 상향

가. 개정안의 내용 및 현황

개정안(김선교의원안)은 25%률이 적용되는 조합의 자산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시행일부터 2028년까지 3조원, 2029년부터 2031년까지 4조원, 2032년부터 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임.¹³⁾

관련하여 25%률이 적용되는 농·축협 조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25%를 규제를 도입할 당시('12.3.2.) 자산 2조원 이상 조합은 1개소¹⁴⁾였음.

그런데 이후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6년 현재 25%률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은 33개소로 증가하였고, 2026년 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합은 42개이며, 2027년 말에는 47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향후 10년 후인 2036년까지 25%률을 적용받게 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조합은 현재보다 97개소 증가한 13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¹⁵⁾

참고로, 현재 33개 조합 중 순천농협, 안동농협을 제외하면 31개가 도시조합(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직전월 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조합)이고, 향후 추가 예정인 14개의 조합도 도시조합에 속함.

13)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25%를 적용 자산총액 기준을 법 시행 직후부터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회부되어 있음(이양수의원안(의안번호 제2204259호, 2024.9.25.), 서삼석의원안(의안번호 제2205553호, 2024.11.14.).

14) 서울축산농협으로 당시 자산 규모는 2조4,056억원이었음.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축협 보험 발전방향」, 2025. 12.

[자산 2조원 이상 조합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사무소명	현재 총 자산 ('26.6월말)	2026년 말 총 자산(추정)	2027년 말 총 자산(추정)	25%를 적용 연도	비고
1	서울축산농협	5,846,277	6,239,427	6,765,203	2012	도시조합
2	영등포농협	5,366,360	5,294,341	5,575,130	2018	도시조합
3	서울서남부농협	4,379,142	4,326,195	4,563,517	2018	도시조합
4	남인천농협	3,612,086	3,569,934	3,682,014	2017	도시조합
5	송파농협	3,525,537	4,260,071	4,703,410	2018	도시조합
6	수원축산농협	3,319,195	3,486,129	3,621,682	2019	도시조합
7	강남농협	3,227,453	3,488,105	3,693,210	2021	도시조합
8	중앙농협	3,177,721	3,339,744	3,587,733	2022	도시조합
9	순천농협	3,162,742	3,818,258	4,213,956	2019	
10	수원농협	3,104,228	3,320,042	3,391,018	2015	도시조합
11	서울우유농협	3,086,979	3,108,481	3,588,444	2019	도시조합
12	서울강동농협	3,026,339	3,843,002	4,320,931	2020	도시조합
13	남서울농협	2,965,881	3,655,119	3,818,232	2020	도시조합
14	서서울농협	2,811,823	2,787,215	2,880,112	2022	도시조합
15	북서울농협	2,799,832	2,727,473	2,826,929	2023	도시조합
16	제주시농협	2,799,558	3,129,121	3,315,391	2017	도시조합
17	남동농협	2,775,933	2,679,047	2,771,630	2022	도시조합
18	대구축산농협	2,719,948	2,810,346	2,950,958	2018	도시조합
19	서울경기양돈농협	2,597,888	2,509,002	2,629,116	2023	도시조합
20	태안농협	2,509,297	3,067,468	3,430,370	2023	도시조합
21	동서울농협	2,413,953	2,378,827	2,465,650	2025	도시조합
22	한국양계농협	2,342,181	2,395,513	2,504,812	2025	도시조합
23	서울경서농협	2,332,872	2,201,084	2,342,493	2026	도시조합
24	서울강서농협	2,320,596	2,106,287	2,172,809	2026	도시조합
25	안동농협	2,222,241	2,316,517	2,404,649	2025	
26	군자농협	2,205,408	2,369,864	2,446,518	2024	도시조합
27	안양축산농협	2,169,114	2,141,742	2,218,992	2026	도시조합
28	전주농협	2,137,119	2,157,775	2,244,298	2026	도시조합
29	부경양돈농협	2,121,087	2,530,120	2,772,175	2024	도시조합
30	한국양봉농협	2,100,755	2,270,197	2,444,732	2026	도시조합
31	청주축산농협	2,066,336	2,281,683	2,450,945	2026	도시조합
32	천안농협	2,022,925	2,439,216	2,690,278	2025	도시조합
33	평택농협	1,896,070	2,099,460	2,195,855	2026	도시조합

구분	사무소명	현재 총 자산 ('26.6월말)	2026년 말 총 자산(추정)	2027년 말 총 자산(추정)	25%를 적용 연도	비고
34	부평농협	2,080,164	2,008,870	2,056,687	2027(예정)	도시조합
35	용인축산농협	2,012,680	2,038,956	2,097,860	2027(예정)	도시조합
36	서부농협	1,960,002	2,030,568	2,070,492	2027(예정)	도시조합
37	송탄농협	1,948,001	2,018,100	2,101,670	2027(예정)	도시조합
38	성남농협	1,946,331	2,042,651	2,125,990	2027(예정)	도시조합
39	평택축산농협	1,880,028	2,095,388	2,226,101	2027(예정)	도시조합
40	안양농협	1,879,927	2,013,558	2,086,213	2027(예정)	도시조합
41	청주농협	1,848,897	2,021,196	2,133,217	2027(예정)	도시조합
42	일산농협	1,793,519	2,002,807	2,077,746	2027(예정)	도시조합
43	북부산농협	1,930,365	1,981,935	2,030,225	2028(예정)	도시조합
44	고양축산농협	1,827,262	1,940,794	2,045,093	2028(예정)	도시조합
45	김해농협	1,687,176	1,942,632	2,067,278	2028(예정)	도시조합
46	원주농협	1,610,817	1,878,500	2,002,320	2028(예정)	도시조합
47	김해축산농협	1,235,650	1,719,540	2,000,074	2028(예정)	도시조합

주: '26,'27년말 총자산(추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4년말 조합 총자산을 근거로 전망한 추정치이며, 실제 '26.6월 총자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농협생명보험

나.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한 자산기준 현실화 필요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 설정된 자산기준이 현재의 경제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¹⁶⁾에 규정된 25%를 적용 자산기

16)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후략>

준(2조원 이상)은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국내 GDP는 약 3.1배 증가(2003년 868조원 → 2025년 2,663조원)하였고, 시중은행 자산은 약 4.2배 증가(1,027조원 → 4,302조원)하였으며, 지역조합의 자산 또한 2012년¹⁷⁾ 이후 약 2.1배 증가(2012년 272조원 → 2025년 566조원)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농촌 지역의 영세한 조합이 규모화를 위해 합병을 진행할 경우 25%를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조합 간 합병 추진을 지연시키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산총액 기준을 최종적으로 5조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법률에서 강화된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대상의 자산규모를 5조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5조원이고 같은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국내 GDP의 0.5%(당시 10조원 수준)인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그 기준을 2002년 2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02년 2조원 → '08년 5조원 → '16년 10조원 → '21년 국내 GDP의 0.5%)해온 것임.¹⁸⁾

17) 2003년 데이터 부재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산규모 5조원을 대상 지정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¹⁹⁾

[자산기준 5조원 이상 규제 법률 현황]

법률	자산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국내 GDP의 0.5% 이상 ※ 약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금융회사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5조원 이상	지배구조 적용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25%률을 적용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까지 3조원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25%률이 적용되는 조합이 15개 조합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후략>

1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913호, 2024.1.2.> 제6조(책무구조도 마련·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또한, 이후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년간 자산기준을 4조원으로 상향하면 7개 조합이, 2032년 5조원으로 상향하면 9개 조합이 25%률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도별·자산구간별 농축협 현황 및 전망]

구 분	'25	'26 (3조)	'27	'28	'29 (4조)	'30	'31	'32 (5조)	'36
5조원 이상	1	2	2	2	3	6	8	9	17
4조원 이상	1	1	2	4	4	6	6	6	7
3조원 이상	9	9	11	9	10	9	12	13	29
2조원 이상	15	21	27	32	38	44	41	47	77
합 계	26	33	42	47	55	65	67	75	130
개정시 규제적용 농축협 수	26	33	15	15	7	12	14	9	1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 농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한 기준 향상 필요

아울러 조합이 25%률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농·축협 조합원은 조합의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조합의 수익은 출자배당과 조합원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야의 이용실적 등을 토대로한 이용고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되므로 자신이 출자한 조합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임.

그런데 25%률로 인하여 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민영보험사의 상품가입을 권유받거나 다른 조합에서 농협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

특히, 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축사·온실과 같은 농업 시설물과 농가주택 등에 대하여도 최대한 인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 민영보험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25%률이 적용되는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조합이 아닌 25%률이 적용되지 않는 인근 조합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음.

[민영보험사의 인수 제한 보험목적물]

보험상품	보험목적물
주택화재보험	목조주택, 농가 소형창고(농기계 보관)
일반화재보험	축사(소/돼지), 양계장 등
	유리온실, 작물 재배실 등
공장화재보험	농업인 수탁 양곡, 정부 추곡수매 양곡
	도축장, 농축산물 가공 공장

자료: 농협손해보험

또한, 25%률에 따르면 조합은 농업인 등을 상대로 민영보험사의 상품을 75% 이상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농업인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민영보험사는 농협보험과 달리 농업인을 위험직군으로 분류²⁰⁾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가입한도나 보장금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농협보험과 민영보험사 농업인 보험료 비교(예)]

구 분	비위험	중위험(위험2급 ~ 위험3급)
농협생명 상해보험	48,540원	58,430원
C화재 건강보험	47,271원	53,502원

주: 40세 남성, 10년납 월납계약 가입 기준

자료: 농협생명보험

20) 농업인 위험등급: 농협보험(비위험) / A생명(고위험), B생명(중위험), C화재(중위험)

[농협보험과 민영보험사 보장금액 비교(예)]

구 분	농협보험(비위험)	민영보험사(위험2급~위험3급)
재해 수술	100만원	30 ~ 60만원
재해 입원	7만원	2 ~ 3만원
사망(일반,재해)	25억원	3 ~ 10억원

자료: 농협생명보험

특히 조합에서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계약변경 등 계약 유지·관리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²¹⁾ 보험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조합은 33개로 전체(1,106개)의 3.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수도권에 분포²²⁾하여 대다수 농업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2027년에 25%률을 적용받게 될 조합은 42개에 이르고, 비수도권 지역 조합의 개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수도권 및 비수도권 조합 추이]

구분	2026	2027 추정	2028 추정
수도권(개)	27	32	33
비수도권(개)	6(18%)	10(24%)	14(30%)
합계(개)	33	42	47

자료: 농협생명보험

21)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는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민영보험사가 조합에 위탁할 수 없는 반면, 농협보험의 경우에는 조합원 및 고객 등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예상되어 조합이 해당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2) 서울 17개, 경기·인천 10개, 경북·대구 2개, 경남 1개, 전북 1개, 전남 1개, 제주 1개

라. 조합의 수익성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

25%를 규제 적용에 따라 보험사업이 위축되어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을 기준으로 25%를 적용받는 조합의 경우 해당 규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보험가입 건수와 수수료가 급격히 감소(보험가입 건수 70.2%, 보험수수료 55.7%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규제 전후 조합 보험수수료 등]

구 분	규제적용 전 (직전년도)	규제적용 후('25년)	감소율(감소건, 액수)
보험가입 건수	100,952건	30,117건	△70.2%(△70,835건)
월납환산보험료	123.4억원	63.7억원	△48.4%(△59.7억원)
보험수수료	593.0억원	262.9억원	△55.7%(△330.2억원)

주: 2025년 규제적용 26개 조합, 농업정책보험은 제외
자료: 농협생명보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5%률이 조합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규제 대상 조합 22개소의 누적 보험수수료 감소액은 1,560억원으로 추정됨.

또한, 향후 2036년 기준 25%를 적용받게 되는 조합이 130개로 증가할 경우 보험수수료 예상 누적 감소금액은 총 6,96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향후 조합의 경영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면, 2025년 25%를 적용 조합을 통한 민영보험사의 보험모집 건수는 전체 민영보험사 보험모집의 0.01%, 조합을 통한 민영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전체의 0.05%로, 25%를 적용 조합이 감소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5년 민영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

구 분	생명	손해	합 계
전체 민영보험사 (A)	13,077,877건	99,556,459건	112,634,336건
농축협 제후 민보사 (B)	8,184건	7,548건	15,732건
비중 (B/A)	0.063%	0.008%	0.014%

[2025년 민영보험사 수입보험료]

구 분	생명(백만원)	손해(백만원)	합 계(백만원)
전체 민영보험사 (A)	121,562,055	132,342,340	253,904,395
농축협 제후 민보사 (B)	101,967	16,305	118,272
비중 (B/A)	0.084%	0.012%	0.047%

주: 수입보험료는 해당기간 중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임.
자료: 농협생명보험

마. 종합의견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을 감안한 자산총액 규모의 현실화 필요성, 조합원인 농업인의 편익 보장, 방카슈랑스 보험 모집이 조합 및 민영보험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5%룰의 적용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이고,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가 금융권의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역시 관련 업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동 개정안은 농협과 주요 보험업계가 협의하여 마련한 합의안임.

문 의 처

02)6788-5414